

영주시 공고 제2024 - 465호

「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년 3월 12일

영 주 시



##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- 공무원임용 시험령,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### 2. 주요내용

-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**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(다자녀 양육자)까지 확대**
- 중의적 의미를 가진 **탈모**라는 용어 대신 **‘모자 등을 쓰지 않은’**이라는 표현으로 수정
- 일부 시간선택제·한시임기제의 요건으로 **‘고등학교·전문대학을 졸업한 자’**를 **‘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(졸업자등)’**로 수정
- **민간경력**으로 응시한 **경우에만** 법인, 단체 등에서의 **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**

### 3. 개정규칙안 : 붙임 1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### 5. 의견제출

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: 총무과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-mail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연락처  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#### ※ 보내실 곳

- 우 편 :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)  
영주시장(참조 : 총무과) 우편번호 36132
- F A X : 054-639-6259 송신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
- 전 화 : 054-639-6272
- E-mail : parkkn12@korea.kr

##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</p> <p>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연락처	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

<붙임 1>

영주시 규칙 제 호

##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

별표 5의3,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응시수수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7조(응시수수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</u></p>